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20 선고 2024가단5325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11. 8.

판결 선고2024. 12. 20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- 피고와 B 사이에 2023. 3. 2. 체결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3. 3. 3. 접수 제85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유한회사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, B은 그 중 보증번호 D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유한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.

E	F 은행 주필지점	대출_일반(일시)	2018-06-082019-06-072020-06-052021-06-042022-06-032023-06-022024-05-31	190,000,000161,500,000	(유) C	-
H 은행 여서동지점	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	2022-04-072023-04-062024-04-05	160,000,000			
D	H 은행 여서동지점	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	2022-04-072023-04-062024-04-05	136,000,000	(유) C	B

나. 원고는 2023. 7. 20.경 및 2023. 9. 1.경 유한회사 C의 분할상환원리금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았고, 이후 유한회사 C를 대위하여 2023. 11. 30. F은행에 158,577,893원, H은행에 135,721,082원을 각 변제하였다.

다. 이후 원고는 유한회사 C 및 B을 상대로 이 법원 2023차전12705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. 12. 19. '채무자 유한회사 C는 금 158,103,159원 및 이 중 금 158,103,055원에 대하여 2023. 11. 30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, 채무자 유한회사 C와 B은 연대하여 금 135,721,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1. 30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4. 2. 14. 확정되었다.

라. 2017. 2. 2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.

마. 피고는 2023. 3. 3.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제850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3. 2.자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, 채무자 B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마쳤다.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① 근저당권자 I조합, 채무자 B, 채권최고액 336,000,000원으로 하는 2017. 2. 2.자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제1 근저당권'이라 한다) 및 ② 근저당권자 F은행, 채무자 유한회사 C, 채권최고액 240,000,000원으로 하는 2019. 8. 23.자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제2 근저당권'이라 한다)가 마쳐져 있었다.

바. 근저당권자 I조합은 이 법원 J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23. 11. 13.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(이하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'이 사건 임의경매절차'라 한다).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79,472,100원(=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가액 257,792,100원 +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액 221,680,000원)으로 평가되었고,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346,660,341원에 낙찰되었으며, 2024. 10. 23.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41,330,240원은 제1 근저당권자 I조합 및 제2 근저당권자 F은행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전액 충당되었다(I조합에 대한 배당액 314,555,770원(배당비율 100%), F은행에 대한 배당액 26,774,470원(배당비율 16.19%)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3. 3. 2.자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은 원고 등 다수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므로,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를 취소하는바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(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

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/2 지분은 K의 소유인바, 그에 관하여는 피고와 K 사이에
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B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, 편의상 원고의
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)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제1, 2 근저당권의
피담보채권액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
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.

나.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
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,
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
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
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
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
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
참조). 이때,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
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, 그
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
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70090 판결,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
2007다78234 판결 등 참조).

다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, 변론 전체의 취지를
종합하여 알 수 있는,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평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
실제 낙찰 금액, 선순위인 제1,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
금액이 제1, 2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변제로 전액 충당되었고, 배당 완료 후에도 제2
근저당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83.81%에 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
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
책임재산이라거나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
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

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한울

별지